

제 25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 11. 5.)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종호]

목 차

| | | |
|---|--|----|
| 1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 2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 3 |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 4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24 |
| 5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9 |
| 6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 34 |
| 7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40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장기재직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함

| 조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 근무기강 확립(안 제4조) | 근무기강 확립(제1조2) |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2조) |
|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 휴가의 종류(제6조) |
| 연가일수의 공제(안 제20조) | 연가일수의 공제(제7조2) |
| 병가(안 제21조) | 병가(제7조5) |
| 특별휴가(안 제23조제3항제8항제10항) | 특별휴가(제7조7제5항·제11항·제13항) |

- 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함(안 제23조제6항)

- 1) 삭제 : 세 번만 분할 사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7
- 2)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9. 2.~9. 2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재기재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과의 일치 및 효율적인 휴가 사용 방법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0. 2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31., 2021. 1. 5.>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장학회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남도 사회적가치 감사결과 정비과제 신설(안 제13조·제14조)
 - 1) 지도·감독 등
 - 2) 출연금의 반환
- 나. 법령·조례를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 삭제
(안 제3조·제9조·제10조·제12조)

- 1) 정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3) 공유재산 무상대여 등 : 「공유재산법」
- 4) 공무원의 인력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제27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범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9. 3.~9. 2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함

5. 검토의견

- 경남도 사회적가치 감사결과 정비과제에 따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법제처 의견제시 의견20-0172**

~생략~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출연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못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제2조의2(적용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모두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탄력적 운영하고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의 남설로 인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신설(안 제10조)
 - 1) 내용 :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기능 대신함
 - 2) 근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 나.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24.~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률 위임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사·중복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 법령명 | 조문 | 법령위임 주요내용 |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 | (제10조제1항 단서)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 질의요지

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¹⁾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 지원대상아동²⁾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

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아동빈곤³⁾의 예방 및 빈곤아동⁴⁾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아동빈곤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서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⁵⁾.

살피건대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모두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기준과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빈곤아동의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3)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하며, 이하 같음.(아동빈곤예방법 제3조제2호)

4)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아동빈곤예방법 제3조제3호)

5) 의안번호 1808383 아동빈곤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0. 12.)

질의 가와 같이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별도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할 것⁶⁾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경우, 해당 조례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거나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1

〔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665,000천원

- 2022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예산액 | 2022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균 특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22년 | 665,000 | 665,000 | 665,000 | - | - | 665,000 | - |

- 라.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4. 부서 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출연기관현황 : 붙임 2

6. 검토 의견

-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장학사업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장학회는 장학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거창군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사업비 665백만원을 출연하여 거창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1] 관계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 | | | | | | | |
|------------------------------|--|------------|-------------------------|-------------------------|-------------------------|-------|-------------------------------|
| 설립근거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 전화번호 : 055-940-8812 | | | |
| | 시 행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홈페이지 : www.gcdream.kr | | | |
| 주요연혁 | 법인설립허가 : 2005. 12. 27. | |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 | |
| | | | | 출연기관 | | | |
|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
| | 0명 | | 0명 | | 0명 | | |
| 임 원 (‘21. 9.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익명처리)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 임 기 (법정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 | 이사장 | 구○○ | 거창군수 | | 2018.7.19.~ | | |
| | 상임이사 | 백○○ | 前 교장 | | 2019.12.26.~2021.12.25. | | |
| | 비상임이사 | 정○○ |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 | 2020.09.21. ~ | | |
| | | 조○○ | 거창군산림조합장 | | 2020.12.24.~2022.12.23. | | |
| | | 이○○ |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 | 2019.12.26.~2021.12.25. | | |
| | | 이○○ |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 | 2019.12.26.~2021.12.25. | | |
| | | 구○○ | 前)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 | 2019.12.26.~2021.12.25. | | |
| | | 이○○ |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 | 2020.12.24.~2022.12.23. | | |
| | | 최○○ | 거창군새마을회장 | | 2020.12.24.~2022.12.23. | | |
| | | 백○○ | 거창한뉴스 대표 | | 2020.12.24.~2022.12.23. | | |
| | | 정○○ |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 2019.12.26.~2021.12.25. | | |
| | | 백○○ | 거창농산 대표 | | 2019.12.26.~2021.12.25. | | |
| | | 송○○ | 거창군이장자울협의회회장 | | 2019.12.26.~2021.12.25. | | |
| | | 김○○ |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 | 2019.12.26.~2021.12.25. | | |
| | | 이○○ | (사)거창시장번영회장 | | 2019.12.26.~2021.12.25. | | |
| | 감 사 | 유○○ | 푸른산내들 이사 | | 2019.12.26.~2021.12.25. | | |
| 정○○ | | 대경회계사무소 | | 2019.12.26.~2021.12.25. | | | |
| 주요기능 |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장학사업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
| 자본금 ^{가)} (단위:백만원) | 10,879 (직전연도말 기준) | |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7,000 | | |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19 | 2020 | 2021 |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 자산 | 10,935 (자산 총액) |
| | 예산액 ⁸⁾ | 1,465 | 1,587 | 1,562 | | 부채 | 56 (부채 총액) |
| | 지자체 지원액 ⁹⁾ | 695 | 735 | 725 | | 자본 | 10,879 ¹⁾ (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 1,140 | | | 911 | | 229 |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거창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 하고자 함

3. 위탁개요

- 가. 사업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나. 기본방향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지원
- 다. 수탁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직원현황 : 3명(센터장 1명, 팀원 2명)
- 라. 설치장소 :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사무실(2층)
- 마. 재위탁기간 : 2022. 1. 1.~2024. 12. 31.(3년)
 - ※ 기존 위탁기간 : 2019. 7. 11.~2021. 12. 31.(3년)

바. 예산내역 : 국·도비 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단위 : 천원)

| 연도 | 2019 | 2020 | 2021 |
|-----|--------|---------|---------|
| 예산액 | 74,000 | 118,600 | 118,600 |

사. 위탁대상사무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

아. 그간 사업현황

○ 등록기관 현황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6월 |
|----------|-------|-------|----------|
| 등록기관(개소) | 26 | 28 | 28 |
| 원아수(명) | 1,259 | 1,207 | 1,086 |

○ 순회방문 현황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6월 |
|--------|-------|-------|----------|
| 위생·안전 | 75 | 151 | 76 |
| 원아수(명) | 0 | 69 | 26 |

○ 식생활교육 현황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6월 |
|------|-------|-----------|-----------|
| 집합교육 | - | - | - |
| 방문교육 | - | 220회/539명 | 126회/142명 |

자.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문의 : 2021. 7.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서 제출·접수 : 2021. 8.
- 재수탁기관 운영실적 자체평가 실시 : 2021. 9.
 - 재위탁요건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전반
 - 자체평가 결과 : 평가점수91.1점 가결(60점 이상 위원회 상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9.
 - 현 위탁기관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합 여부 심의
 - 심의위원 : 6명(공무원 2명, 민간인 4명)
 - 심의결과 : 심사점수 96점 원안가결(60점 이상 원안가결)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0.
- 재위탁 협약서 체결 : 2021. 11.

4. 참고사항

가. 재위탁의 필요성

- 재위탁을 통한 사업 연속성 보장으로 맞춤형 급식소 관리·지원
- 지역대학교 전문가 활용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

나.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의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급식영양 컨설팅,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 어린이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나. 대 상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976,000천원
- 2022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예산액 | 2022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균 특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22년 | 843,000 | 976,000 | 976,000 | - | - | 976,000 | - |

라.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4. 부서 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6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출자·출연법」,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출연기관현황 : 붙임 2

6. 검토 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문화재단은 군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군민중심의 문화정책 추진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지역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창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거창한마당대축제와 거창국제연극제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내년에는 재단측의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출연기관 현황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 | | | | | |
|------------------------|--|------------------|----------------------------|-----------------------------|-----------------------------|
| 설립근거 |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 전화번호 : 055-940-8460 | | |
| | | | 홈페이지 : www.gccf.or.kr | | |
| 주요연혁 |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 | |
|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 계 | 정규직 | 비정규직 | | |
| | 16명 | 7명 | 9명 | | |
| 임원 (‘21. 9. 기준) | 직책 (직책명) | 성명 (익명처리)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 이사장 | 구○○ | | ‘18. 07. 01. ~ | |
| | 상임이사 | | 공백 | | |
| | 비상임이사 | 조○○ | 문화관광과장 | | ‘21. 03. 08. ~ |
| | | 하○○ |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 ‘21. 02. 18. ~ ‘23. 02. 17. |
| | | 안○○ |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 | ‘21. 02. 18. ~ ‘23. 02. 17. |
| | | 이○○ |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 | ‘21. 02. 18. ~ ‘23. 02. 17. |
| | | 하○○ |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 ‘21. 02. 18. ~ ‘23. 02. 17. |
| | | 신○○ |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 | ‘21. 02. 18. ~ ‘23. 02. 17. |
| | | 이○○ |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 | ‘21. 02. 18. ~ ‘23. 02. 17. |
| | | 권○○ | 거창미술협회사무국 지부장 | | ‘21. 02. 18. ~ ‘23. 02. 17. |
| | | 김○○ | 주)거창중앙신문 대표 | | ‘21. 02. 18. ~ ‘23. 02. 17. |
| | | 김○○ | 거창문화원 이사 | | ‘21. 02. 18. ~ ‘23. 02. 17. |
| | | 김○○ | 前국제로타리3590지구 사무국장 | | ‘21. 02. 18. ~ ‘23. 02. 17. |
| | | 유○○ | 거창예술강사협의회 회장 | | ‘21. 02. 18. ~ ‘23. 02. 17. |
| | | 정○○ | 사)민족미술인협회거창지부 지부장 | | ‘21. 02. 18. ~ ‘23. 02. 17. |
| 감사 | 정○○ | 대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 ‘21. 02. 18. ~ ‘23. 02. 17. | |
| | 정○○ | 재무과장 | | ‘21. 07. 05. ~ | |
| 주요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자본금 (단위:백만원) | | 50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 |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 출자 : 50백만원 출연 : 843백만원('21.) |
|------------------------------------|--------------------------|---------------------|-------|-------|------------------------------|------------------|---------------------------------|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19 | 2020 | 2021 |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 자산 | 531 (자산 총액) |
| | 예산액 ²⁾ | 2,861 | 2,656 | 3,840 | | 부채 | 364 (부채 총액) |
| | 지자체 지원액 ³⁾ | 2,761 | 2,556 | 3,740 | | 자본 ¹⁾ | 167 (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 1,655 | | | 1,676 | | ▲ 21 |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2022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나.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다. 사업비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4,114천원
- 2022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예산액 | 2022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균 특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22년 | 3,486 | 4,114 | 4,114 | - | - | 4,114 | - |

※ 산출기초 : '20년 결산 보통세 34,280,189천원 × 1.2/10,000

라.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4.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 나. 출연기관현황 : 붙임 2
- 다.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공문 : 붙임 3

6.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도 우리군 부담분 4,114천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개발, 지방세 포럼 등의 사업수행을 통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세 업무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 | | | | | | | |
|---------------------------------|-------------------------------|--------------------------------|--|--------|---|-------|--------------------|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 | | 02-2071-2789 | | |
| | | | | | www.kilf.re.kr | | |
| 주요연혁 |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 | 기관형태 | 출연 | | |
|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 임시직·파견 | | |
| | 80명 | |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 |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2) | | |
| 임원 (2021년 8월 기준) | 직책 (직책명) | 성명 | 주요경력 | | 임기 | | |
| | 이사장 | 백재현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 2020.12.22. ~ 2023.12.21. | | |
| | 부이사장 | 이동진 | 서울도봉구청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배진환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 당연직 | | |
| | 이사 | 이우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 당연직 | | |
| | 이사 | 김일용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임재진 |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신용식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박일동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김미경 | 서울 은평구청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이항진 | 경기 여주시장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백선기 | 경상북도 칠곡군수 | | 2021.2.28. ~ 2022.2.27. | | |
| | 이사 |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 2021.2.28. ~ 2022.2.27. | | |
| | 감사 | 하종목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 당연직 | | |
| | 감사 | 유희숙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 | 2020.2.28. ~ 2022.2.27. | | |
| |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 | | | |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 1 (직전연도말 기준) | |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 |
| | | | | |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 | |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19 | 2020 | 2021 |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 자산 | 19,680 (자산 총액) |
| | 예산액 | 12,897 | 10,855 | 11,928 | | 부채 | 127 (부채 총액) |
| | 지자체 지원액 | 10,843 | 8,972 | 10,821 | | 자본 | 19,553 (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 12,504 | | | 9,816 | | 2,688 | |

[붙임 3] 예산편성 협조 공문

인쇄 : 정성욱 / 재무과 (2021-10-01 17:26:25)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029(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금 집계표(최종)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세무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창원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세무회계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정관리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 | | | | | |
|-----|-----|------|-----|------|------------------------|
| 주무관 | 전지혜 | 세정담당 | 강병문 | 세정과장 | 전걸 2021. 9. 23. 조현국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세정과-13003 | (2021. 9. 23.) | 접수 | 재무과-25605 | (2021. 9. 23.) |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4 팩스번호 055-211-3719 / bloom1208@korea.kr / 대국민 공개

만남·모임·행사 등의 대면 모임 잠시 멈춰주세요

문서관리카드 재무과-25605 1/1

2022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 자치단체명 | ① '20년 결산 지방세 | '20년 결산 보통세 | | | '22년 출연금 | | | |
|-------|----------------|----------------|----------------|---------------|-------------|--------------------------|--------------------|---------|
| | | ② 소계 (a+b) | ③ 현년도 a | ④ 과년도 b | ⑤ '21년 정산액 | ⑥ '22년 출연분 (2*1.2/10000) | ⑦ '22년 출연금 (7)=⑥+⑤ | |
| 전국합계 | 99,972,195,750 | 93,004,628,294 | 92,931,470,445 | 73,157,849 | 2,636,716 | 11,160,551 | 13,797,267 | |
| 경 남 도 | 경남도 소계 | 5,731,860,599 | 5,239,388,166 | 5,244,428,221 | -5,040,055 | 0 | 628,724 | 628,724 |
| | 경남도 분청 | 3,273,535,589 | 2,810,153,189 | 2,838,926,265 | -28,773,076 | | 337,218 | 337,218 |
| | 창원시 | 768,566,598 | 739,481,391 | 738,214,521 | 1,266,870 | | 88,737 | 88,737 |
| | 진주시 | 236,377,517 | 236,377,517 | 232,147,307 | 4,230,210 | | 28,365 | 28,365 |
| | 통영시 | 66,076,707 | 66,076,707 | 64,097,316 | 1,979,391 | | 7,929 | 7,929 |
| | 사천시 | 85,261,553 | 85,261,275 | 88,306,970 | -3,045,695 | | 10,231 | 10,231 |
| | 김해시 | 371,798,148 | 371,798,148 | 363,624,537 | 8,173,611 | | 44,615 | 44,615 |
| | 밀양시 | 103,140,545 | 103,140,545 | 102,152,933 | 987,612 | | 12,377 | 12,377 |
| | 거제시 | 156,137,143 | 156,137,143 | 154,354,628 | 1,782,515 | | 18,736 | 18,736 |
| | 양산시 | 315,300,775 | 315,296,401 | 311,631,224 | 3,665,177 | | 37,836 | 37,836 |
| | 의령군 | 23,251,671 | 23,251,671 | 22,925,872 | 325,799 | | 2,790 | 2,790 |
| | 함안군 | 71,809,600 | 71,809,600 | 69,955,292 | 1,854,308 | | 8,617 | 8,617 |
| | 창녕군 | 47,427,435 | 47,427,435 | 47,075,556 | 351,879 | | 5,692 | 5,692 |
| | 고성군 | 41,466,139 | 41,466,139 | 40,641,276 | 824,863 | | 4,976 | 4,976 |
| | 남해군 | 26,121,248 | 26,121,248 | 25,978,909 | 142,339 | | 3,135 | 3,135 |
| | 하동군 | 28,569,393 | 28,569,393 | 28,424,699 | 144,694 | | 3,428 | 3,428 |
| | 산청군 | 26,278,831 | 26,278,831 | 26,300,719 | -21,888 | | 3,153 | 3,153 |
| | 함양군 | 28,653,827 | 28,653,827 | 28,369,671 | 284,156 | | 3,438 | 3,438 |
| | 거창군 | 34,280,189 | 34,280,189 | 33,752,157 | 528,032 | | 4,114 | 4,114 |
| 합천군 | 27,807,691 | 27,807,517 | 27,548,369 | 259,148 | | 3,337 | 3,337 | |